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[김보경 의원 대표발의]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892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5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 도일용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지원, 교육, 홍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공동주택관리법(제2조, 제65조의2)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동주택”이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.
2. “경비노동자”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입주자등”이란 공동주택 입주자, 입주자대표회의(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관)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4. “기본시설”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, 휴게실, 편의시설(화장실 및 샤워시설)을 말한다)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가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)**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실태조사 및 개선권고)** ① 군수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그 차별 여부, 기본시설의 설치·이용 현황 등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의 범위)** ① 군수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지원
2.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아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서비스 연계 지원
3.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
4. 경비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·노동 조건 등 경제적·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지원
5.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

**제7조(교육, 홍보 등)** ① 군수는 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, 기본 시설의 설치·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비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)** 군수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